



주민들이 직접 만든 주민자치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론장

2019. 불광2동 주민총회

○ 일시 : 2019. 9. 21. (토) 10:30
○ 장소 : 연신중학교 강당 (1층)





식순

순서	시간	내용
식전공연	10:00~10:10	참석자 등록 후 입장
	10:10~10:30	축하공연 & 인사나눔
1부 개회	10:30~10:35	개회선언
		국민의례
	10:35~11:00	인사말
		축사
	11:00~11:10	민관 협약식
2부 주민자치회 현황 보고 및 의제 선정	11:10~11:15	2019년 주민자치회 현황보고 및 2020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보고
	11:15~11:25	2020년 주민세 환원예산 사업계획 발표
	11:25~11:30	주민세 환원예산 의제 숙의 및 투표
	11:30~11:40	2020년 동 참여예산 사업계획 발표
	11:40~11:45	동 참여예산 의제 숙의 및 투표
	11:45~11:55	주민세 환원예산 및 참여예산 결과발표
3부 폐회	11:55~12:00	폐회선언
		기념촬영





목차

I. 인사말씀

- 01 주민자치회장 인사말씀 05
- 02 불광2동장 축하말씀 06

II. 민관공동추진협약서

07

III. 보고안건

- 01 2019.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09
- 02 2019.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8월말 기준) 13
- 03 2020. 운영계획 보고 18
- 04 2019. 상반기 감사 보고 22
- 05 2020. 시민참여예산 실행의제 보고 24

IV. 승인안건

- 01 2020. 개인균등분 주민세 환원사업 의제 27
- 02 2020.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의제 32

V. 부록

- 0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37
- 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3





I. 인사말씀

- 01 주민자치회장 인사말씀
- 02 불광2동장 축하말씀





01 주민자치회장 인사말씀



유 두 선 주민자치회장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회장 유두선입니다.

먼저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만큼 넉넉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불광2동 주민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불광2동 주민자치회가 올해3월 출범한 이래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불광2동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동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직접 결정하는 마을 공동체의 현장이자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행사준비에 힘써주신 자치위원님들과 분과위원님들 그리고 민관협력에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는 이동용 동장님과 불광2동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는 분들의 수고가 우리 마을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가꾸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일상을 뒤로하고 주민총회에 참석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불광2동이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광2동장 축하말씀



이 동 용 불광2동장

안녕하세요!
불광2동장 이동용입니다.

2019년 불광2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휴일임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서 지난 3월 20일 발대식을 거쳐 불광2동 주민
자치회로 출범한 후, 오늘 주민총회 개최까지 6개월 동안 주민자치회 5개분과(공동체, 안
전, 환경, 참여, 돌봄)별로 주민의 소리에 귀기울인 결과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
굴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등 우리 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평소 생각했던 개선사항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최종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는 분명히 우리 불광2동이 더 살기 좋
은 마을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또한 동장으로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께서 선택한 사업들이 성공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민총회가 개최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유두선 회장님과 주민자
치위원님들, 그리고 주민총회를 홍보해 주시고 물심양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우리 마을
직능단체 회장님들과 회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불광2동 주민자치회의 무한
한 발전을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I. 민관공동추진협약서

민관공동추진협약서

불광2동 주민자치회와 은평구청은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불광2동 주민총회를 열고, 결정된 자치계획을 민관협력과 협치의 원리에 따라 상호 협력, 지원, 실행할 것을 협약합니다.

2019년 9월 2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불광2동 주민자치회장
유두선



Ⅲ. 보고안건

- 01 2019.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02 2019.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8월말 기준)
- 03 2020.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보고
- 04 2019. 상반기 감사 보고
- 05 2020. 시민참여예산 실행의제 보고

01 2019년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따라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불광2동 주민자치회는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조례 제1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불광2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불광2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불광2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9. 27.]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031호, 2019. 9. 27., 전부개정]

은평구 (자치행정과 자치사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인주제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등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같다.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등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기로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공평하다 독립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적일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 지역의 등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자치계획의 운영 중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주민공사의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
1. 동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관한 것으로 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 강화
2. 위해 예방 업무

제6조(위원의 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 주민자치회란?

- 주민자치회는 동단위로 설치된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주민단체가 융합하여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 주민 대표성을 갖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우리 동네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주민총회가 바로 우리 동네의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 주민자치회 구성

- 2018. 4월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 2019. 1. 2. ~ 1. 31. : 불광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 2019. 2.13. ~ 2. 15. : 132명 모집 인원 중 106명 자치학교 교육 이수
- 2019. 3. 11. :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위원 50명, 예비자 10명)
- 2019. 3. 15.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 2019. 3. 20. : 주민자치회 발대식



위원 공개추첨



발대식



자치회 홍보



주민자치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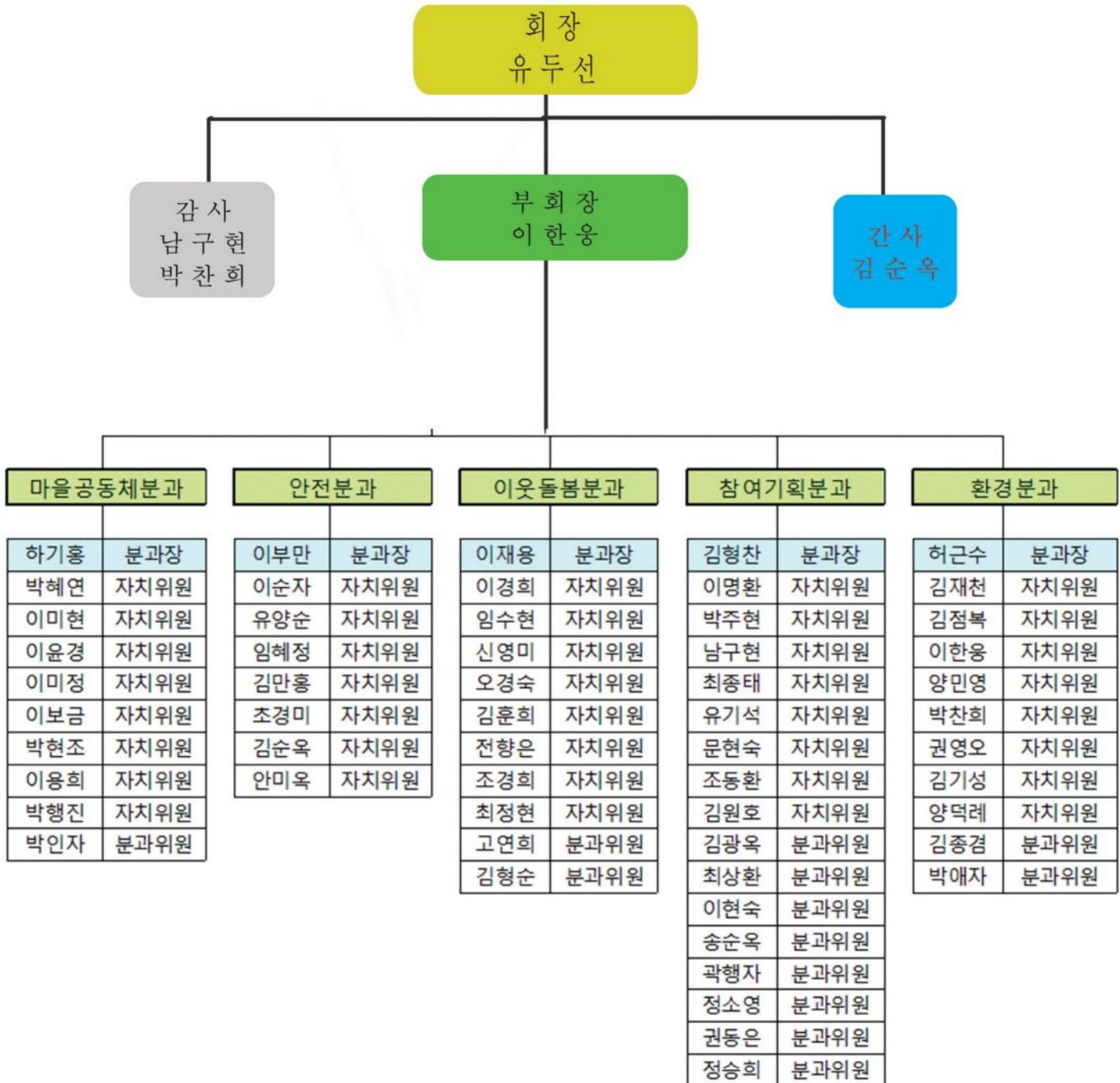
사무국 현판식



위원 공개모집

- 주민자치회 현황
 - 주민자치회 위원 : 50명
 - 임원단 현황

직위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장
이름	유두선	이한웅	남구현, 박찬희	김순옥	5개분과장



○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회의명	대상	목표		주요내용(안건)
		인원	개최(회)	
정기(임시)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50	월 1회 (둘째주 화요일)	계획 및 결과보고, 사업논의 등
사무국회의	회장, 간사, 담당주무관, 동지원관	4	주 1회 (매주 화요일)	임원회의 안건정리, 정기회의 결과 실행
임원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동지원관	10	월 1회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안건 실행
분과회의	분과장, 분과원	15명 내외	월 1회 이상	의제발굴, 의제개발, 지역자원발굴
민관협력회의	회장, 동장, 간사, 담당주무관, 동지원관	6	월 1회	자치회 회의 공유 및 협력



임원회의



분과구성 워크숍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정기회의

02 2019. 주민자치회 사업 보고(8월말 기준)

사업명	자매결연지 교류
일시	2019. 5. 3.(금) 08:30 ~15:00
장소	연천군 구석기축제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산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전시 축하 메시지 전달 ○2019년 불광2동 축제(의병장 밥할머니 축제) 방문 요청 ○여름방학 농촌체험 프로그램 협의 ○양 주민자치위원 친목 교류
활동사진	  
소요예산	400,530원

사업명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일시	2019. 6. 15.(토) ~ 6. 16. (일)	
장소	한옥촌 신선마을(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 ○ 주민자치회 분과별 역할 정립 및 토론 ○ 자치회관 운영 개선 방안 토론 및 간담회 ○ 실질적 서울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위원회 기능과 역할 ○ 주민자치회 6월 정기회의 개최 	
활동사진		
소요예산	1,500,000원	

사업명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일일 농촌체험
일시	2019. 7. 29. (월) 9:00~18:00
장소	푸르내마을(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울토마토 따기 ○연천군 특산물 울무 강정만들기 ○여름철 물놀이 ○재인폭포 방문
활동사진	 
	 
소요예산	896,640원

사업명	우리 마을 달빛 캠핑	
일시	2019. 8. 23. (금) ~ 8. 25. (일)	
장소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핑텐트 설치 및 해체하기 ○ 버스킹 공연 ○ 야외 영화 상영 ○ 우리 마을 역사 알기 ○ 우리 마을 환경 가꾸기 	
활동사진		
		
소요예산	10,000,000원	

사업명	산 속, 어린이 물놀이장
일시	2019. 9. 9. (금) 10:00~15:00
장소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용 에어슬라이드 운영 ○어린이용 풀장 및 유아용 풀장 운영 ○먹거리 부스 운영
활동사진	 
	 
소요예산	2,843,510원

03 2020.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보고

1. 2020.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개요

사업명	은평구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	
기간	2020. 01. 01. ~ 2020. 12. 31.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한 지역안착화 ○ 의제 발굴 및 숙의를 통한 동단위 맞춤형 자치계획 수립 ○ 민관협력을 통한 마을문제 해결력 향상 	
세부계획	회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 : 50명, 월1회 ○ 임원회의 : 10명, 월1회 ○ 분과회의 : 50명 자치위원 + 13명 분과위원, 월1회 ○ 민관협력회의 : 월1회 ○ 민관실무회의 : 수시 ○ 사무국회의 : 주1회
	분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과위원 모집 및 온·오프라인 운영 ○ 의제발굴 및 실행촉진 워크숍 개최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분과회의 ○ 분과의제 조정 및 주민공유회 개최
	의제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 의제 발굴 워크숍 진행 ○ 분과별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 동지역 주민들 욕구 조사 및 의제 발굴 ○ 의제 공유회 및 설명회 개최
	주민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계획에 대한 보고 및 승인 ○ 발굴된 의제 숙의 ○ 승인된 자치계획에 대한 홍보 및 반영

2. 2020. 주민자치회 운영 세부계획

-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서울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2017.02.)
 -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8.9.20.)
- 추진목표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한 지역안착화
 - 의제 발굴 및 숙의를 통한 동단위 맞춤형 자치계획 수립
 - 민관협력을 통한 마을문제 해결력 향상

-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
 - 회의 운영 개요

회의명	대상	목표		주요 내용(안건)
		인원	개최(회)	
정기(임시) 회의	주민자치회 위원	50	월1회	계획 및 결과보고, 사업논의 등
사무국회의	회장, 간사, 담당주무관, 동지원관	4	주1회	임원회의 안건정리, 정기회의 결과 실행
임원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동지원관	10	월1회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안건 실행
분과회의	분과장, 분과원	10~20	월1회 이상	의제발굴, 의제개발, 지역자원발굴
민관협력 회의	회장, 동장, 간사, 담당팀장, 담당주무관, 동지원관	6	월1회	자치회 회의내용 공유 및 협력
민관실무 회의	간사, 담당주무관, 동지원관	3	수시	각종회의에 관한 협력 및 실무논의

- 분과구성(운영) 및 자치계획 수립
 - 분과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의제발굴
 -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 분과 구성 계획
 - 현수막 및 배너를 비치하고 분과 홍보를 진행
 - 주민자치회 신청자 중에서 추천되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참여독려
 - 지역 단체와 주민에게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관심분야에서 지역의 의제를 도출하여 분과구성
- 분과 운영 계획
 - 분과장이 분과회의 진행 및 계획 수립, 교육
 - 부분과장은 회의록 작성 및 행정적 업무 지원, 분과원 관리
 - 민주적인 회의구조 안착화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지역을 돌아보아 분과의 의제와 실질적인 지역의 의제가 일치하는지 확인
 -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하여 위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
 - 월1회 이상의 회의시간을 확보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3. 주민총회 계획 및 운영

- 목적
 - 주민이 자치계획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민총회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의제를 숙의, 보고과정 진행
 - 총회 결정사항을 자치구청장 승인을 받아 실행을 위한 계획 및 주민의 참여 방법까지 기획하는 과정

- 총회준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주민총회 준비 위원회 구성
 - 각 분과별 의제 계획들을 정리하고 총회 안건으로 타당하도록 정리하여 정책공유회에 제시
 - 총회 행사 홍보 및 총회 내용과 의제에 관한 다양한 홍보 기획
 - 총회 진행과정 계획
 1. 주민의 0.5%의 총회참석을 목표로 홍보 진행
 2. 사전투표를 진행하여 총회 홍보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3. 지역단체 및 기관 방문 등 찾아가는 의견청취
 4. 축제같은 분위기의 공간 구성
 5. 발표회보다는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자와 진행도우미 배치
 - 총회 평가

임원회의에서 평가를 진행한 후에 정기회의에서 평가내용을공유하고 위원들의 추가 의견들을 받아서 평가 정리하여 다음 해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총회 운영계획
 - 일 정 : 2020년 6월
 - 기본방향 : 분과별 의제들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숙의를 통한 지역의제 발굴 및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

- 총회 주민홍보
 - 현수막 게시 및 전단 배포
 - 웹자보와 포스터 부착 및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자치계획 실행계획 수립 과정
 - 분과 \rightarrow 사무국 \rightarrow 임원회의 \rightarrow 민관협력회의 \rightarrow 정기회의 \rightarrow 총회 과정으로 진행

- 결과 주민공유
 - 자치회 정기회의 시 보고 및 주민총회 시 보고
 - 구 홈페이지, 자치회관 홈페이지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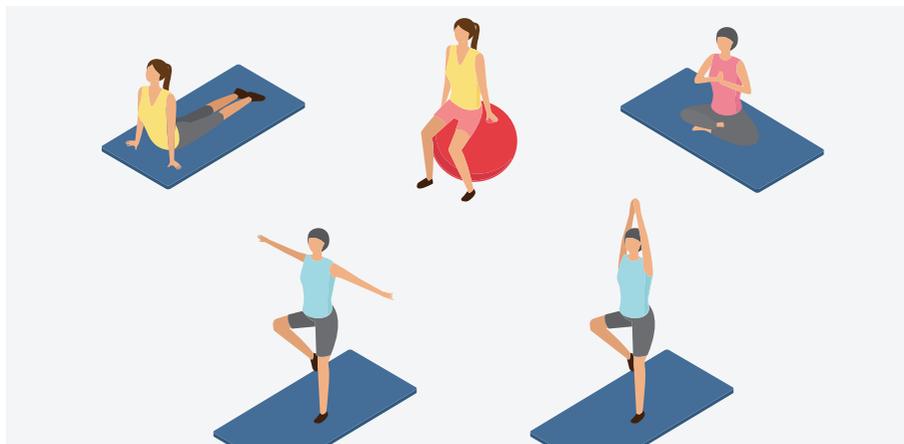
4. 2020. 자치회관 운영 계획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간 : 2020. 1. 1. ~ 12. 31.[분기별 운영]
 - 운영강좌

강좌명	요일	운영시간	모집인원	신청대상	수강료 (3개월)	강좌실
필라테스	화·목	13:30 ~ 15:00	20	누구나	45,000원	2층 다목적실
단전호흡	화·목	09:30 ~ 11:00	20		45,000원	2층 다목적실
파워요가	월·수	13:30 ~ 15:00	20		45,000원	2층 다목적실
요가교실(A)	월·수	17:00 ~ 18:30	25		45,000원	2층 다목적실
요가교실(B)	월·수	18:30 ~ 20:00	25		45,000원	2층 다목적실
라인댄스(초급)	금	13:30 ~ 15:30	20		30,000원	2층 다목적실
미용교실	월·화	10:00 ~ 13:00	20		75,000원	3층 강좌실
찰흙공예	목	16:30 ~ 17:30	15	5-10세	15,000원	3층 강좌실

※ 기초생활,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수강료 100% 감면
 ※ 65세 이상 및 만18세 이하는 수강료 50% 감면

- 자치회관 유희공간 대여
 - 장 소 : 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 정 원 : 60명
 - 사용료 : 7,500원/1시간
 - 신청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혹은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예약



04 2019년 상반기 감사 보고

불광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

〈2019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감사종류	불광2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감사대상	불광2동 주민자치회
감사내용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2. 주민자치회 각종 서류 및 회의록 3. 주민자치회 각종 회계
조치사항	1. 주민자치회 사업 및 운영 1)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원만한 추진 2)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 3) 하반기 주민총회 준비 철저 2. 각종 회의록 1) 모든 회의자료 및 회의록 구비 정상 3. 각종 회계 1) 월 회비 증빙서류철 구비 2) 보조금 예산이 집행 철저 당부
종합의견	상반기 사업 및 회계감사에서 특이사항 없으며 비교적 원만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점을 확인

위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07월 19일

제출자 감사(남구현, 박찬희)

은평구청장 귀중

2019년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세부내용

1. 개요

- 근거 :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5조
 은평구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 14조
- 내용 : 2019년 상반기 불광2동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 감사
- 일시 : 2019년 7월 17일
- 장소 : 불광2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 감사 : 불광2동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남구현 감사, 박찬희 감사

2. 감사내용

■ 회계감사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 이천사백만원에 대한 2019년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음. 보조금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음.
- 4월 예산 수립이후 6월 말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고 해당 감사기간(4월1일~6월30일)에 예산에 대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해당사항 없음.
- 따라서 보조금 예산의 집행과 보고는 하반기 감사대상으로 사료됨.
-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동을 보조할 목적으로 자치위원에 한하여 2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간사는 입출의 내용을 세부항목으로 기재해놓고 결재라인은 간사-회장으로 지출이 되어있음을 확인함.
- 또한 부칙에 규정된 바와같이 1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는 선결제 후 자치회장의 승인을 거치는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음을 확인함.
- 다만 현금성 지출의 경우 증빙을 (예: 찬조금 혹은 단체회비의 경우, 단체장 명의의 싸인) 받아두는 것으로 하며, 증빙 서류철을 구비해놓는 것을 관리방안으로 제시함.
- 현재까지 회비 이외에 예산사용이 되지 않아 회계감사를 할 것이 없지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사업과 활동을 하게될 경우 상당한 업무량이 간사에게 지워질 것이므로 운영세칙에서 인정하는 대로 총무를 두어 일의 분담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할 것임.

■ 사업감사

-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위원모집과 위촉, 내규수립과 임원선거, 분과원 모집에 이르기까지 준비를 원만하게 추진해왔음. 실질적인 사업은 2019년 4월부터 시작하여 6월말까지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었는 바, 6월 워크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의와 문서생산 및 관리가 주된 사업이었음.
- 문서생산 및 보관에 있어서 모든 회의자료와 분과위원회 회의록, 정기회의 회의록, 임원회의 회의록, 민관협력회의 회의록 등을 포함하여 증빙자료와 사진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함.
- 정기회의는 3분의 2이상이 모임으로써 비교적 진행이 원활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치위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볼 때 정기회의에 비해 출석율이 저조하므로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봄.
- 하반기에 사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업의 경중을 잘 고려하여 역량배치를 해야하는데 그중에서도 주민총회 준비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말이나 명년에 조례 개정에서 자치위원 예비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신 자치회장과 간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림.

사진자료



2019년 7월 17일
감사 남구현
감사 박찬희

05 시민참여예산 실행의제 보고

※ 시민참여예산 2000만원의 경우, 구 참여예산 사업비로 대체될 수 있음.

※ 2019년 7월 9일 주민총회를 거쳐 시민참여예산 의제에 관한 발표 및 투표 결과 3개 의제 선정

1. 이웃돌봄분과 제안의제

과제명	맞벌이 부부 아이돌봄		
소요예산	1,000만원		
제안위치 (장소)	동주민센터 등	주요당사자	불광2동 맞벌이부부
제안사유	맞벌이 부부가 토, 일요일에 출근할 경우 학교는 폐쇄되고 놀이터도 위험하여 잠시 맡아줄 시설이 필요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0. 3월~12월 ○ 맞벌이부부의 신청을 받아 토, 일요일 자치회관 혹은 활용 가능한 장소에서 미니블럭과 도서를 제공 받아 아이의 놀이와 교육을 같이 함. ○ 봉사인원 3~4명이 밴드활용을 통해 수시로 아이들의 상황을 부모에게 알림. 		

2. 환경분과 제안의제

과제명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홍보물 부착		
소요예산	700만원		
제안위치 (장소)	불광2동 곳곳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쓰레기 분리수거 가능, 불가능 물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자원낭비가 심함.		
만들고 싶은 변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0. 3월 ~ 6월 ○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에 따라 불광2동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여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여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함. 		

3. 이웃돌봄분과 제안의제

과제명	무료한 어르신과의 대화		
소요예산	300만원		
제안위치 (장소)	새장골 느티나무	주요당사자	불광2동 어르신
제안사유	새장골 공원 느티나무 아래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앉아계시는 모습을 자주 보고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고자 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0. 5월 ~ 8월 ○ 이웃돌봄분과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새장골 느티나무 밑 벤치에 앉아계신 어르신들과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어 무료한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 		

IV. 승인안건

01 2020. 개인균등분 주민세 환원사업 의제

1. 2020 개인균등분 주민세 환원사업이란
2. 2020 개인균등분 주민세 환원사업 총괄표
3. 환경분과 제안의제
4. 참여기획분과 제안의제
5. 안전분과 제안의제
6. 이웃돌봄분과 제안의제

02 2020.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의제

1.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이란
2.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총괄표
3. 제안의제(1)
4. 제안의제(2)
5. 제안의제(3)
6. 제안의제(4)
7. 제안의제(5)



01 2020. 개인균등분 주민세 환원사업 의제

1. 2020. 개인균등분 주민세 환원사업이란?

- 주민이 낸 개인균등분 주민세(4,800원)를 돌려받아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 내년 우리 동은 51,517천원을 돌려 받습니다.

2. 2020. 개인균등분 주민세 환원사업 총괄표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
1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골목 만들기	3,000만원
2	쇼미더 불광	1,500만원
3	주민 안전 및 생활교육	500만원
4	한여름 밤의 꿈	1,000만원

- 투표방법 -
 제안자의 설명을 잘 들으신 후
 나눠드린 스티커를
 우리 동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명에
 붙이시면 됩니다~

3. 환경분과 제안의제

과제명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골목만들기		
소요예산	3,000만원		
제안위치 (장소)	불광동 436-6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계단노후 및 파손으로 보행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계단정비 및 난간 설치를 통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020년 3월~6월 ○ 내 용: 불광2동 지역특성 상 고지대에 주택지역이 밀집해 있어 불광동 436-6 경사로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화가 심하고 모서리가 부식되어 있는 등 어르신들 보행 시 위험하기에 계단의 보수 및 안전바 신규설치로 어르신 보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함. 		



4. 참여기획분과 제안의제

과제명	쇼미더 불광		
소요예산	1,500만원		
제안위치 (장소)	물빛공원	주요당사자	불광2동 학생
제안사유	불광2동에 중학교가 3개가 있음에도 청소년들만의 축제가 없어 청소년들의 축제를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2020년 8월~10월 ○ 내 용: 불광중, 연신중, 연천중을 비롯한 학생과 불광2동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랩, 노래, 춤, 연주 등을 선보임으로써 청소년과 마을주민의 문화축제의 장으로 조성 ○ 2020년 8월 : 불광2동 소재 학교 및 청소년 유관단체에 홍보 ○ 2020년 9월 : 행사에 참가할 개인 및 단체 접수 ○ 2020년 10월 : 행사 시 전문진행자, 초대가수(랩퍼) 초빙 운영 		



5. 안전분과 제안의제

과제명	주민 안전 및 생활교육		
소요예산	500만원		
제안위치 (장소)	불광2동 주민센터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교육을 비롯해서 성평등 의식의 젠더교육 등을 마을주민이 교육에 참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020년 3월~10월 ○ 내 용: 재난안전교육, 성평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3대 주제의 교육을 3회씩 번갈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해당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한 각종 실기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함. ○ 교육자들의 참가를 확인하는 수료증 발급 		



6. 이웃돌봄분과 제안의제

과제명	한여름 밤의 꿈		
소요예산	1,000만원		
제안위치(장소)	향림도시농업체험원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불광2동의 대표 힐링공간인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여름의 더위를 피하고 이웃간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2020년 8월 ○ 내 용: 주말 포함 금요일부터 3일간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서 낮에는 어린이 대상 물놀이 행사를 하고 밤에는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을 하여 도심 속 자연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02 2020.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의제

1. 2020.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이란?

- 우리 동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 내년 우리 동은 4,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2. 2020. 참여예산 동 지역사업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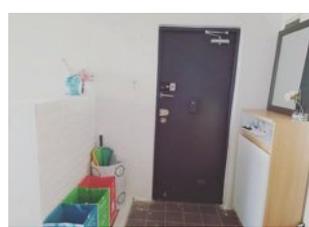
연번	사업명	소요예산
1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을 위한 다목적CCTV설치	4,000만원
2	우리 함께 쾌적한 주거생활	1,000만원
3	보행자를 위한 골목길 만들기	3,000만원
4	토닥토닥 열린 문 사업	635만원
5	건강한 먹거리 먹고, 건강하자	500만원

- 투표방법 -
 제안자의 설명을 잘 들으신 후
 나눠드린 스티커를
 우리 동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명에
 붙이시면 됩니다~

3. 제안의제(1)

과제명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		
소요예산	4,000만원		
제안위치 (장소)	연서로 43길 17 통일로 80길 11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교차로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어서 CCTV 설치가 필요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 연서로 43길 17과 통일로80길 11은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이 잦으며 교차로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인데도 반경 50m내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 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4. 제안의제(2)

과제명	우리 함께 쾌적한 주거생활		
소요예산	1,000만원		
제안위치(장소)	불광2동 전체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집에 곰팡이가 피는 등 주거환경이 안 좋아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 돕고자 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 저소득층이지만 주거복지에서는 소외된 30가구를 발굴하여 곰팡이 제거, 청소, 정리수납 등 해당 가구가 원하는 주거생활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함.		

5. 제안의제(3)

과제명	보행자를 위한 골목길 만들기		
소요예산	3,000만원		
제안위치 (장소)	연서로289 일대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보행자 길과 도로변이 교차하는 지점이라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라 예방대책이 필요함.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 연서로 289 일대는 골목길 2개가 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써 보행자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은 곳이라 안전사고가 우려됨. 가상과 속방지턱 설치 등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6. 제안의제(4)

과제명	토닥토닥 열린 문 사업		
소요예산	635만원		
제안위치 (장소)	통일로92가길9	주요당사자	불광2동 독거 어르신
제안사유	홀로 계신 불광2동 어르신들의 정서지원 목적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위치: 통일로92가길9번지 ○ 수혜대상: 독거 어르신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 뜨개질 수업, 원예수업(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5회) 수 : 인형 만들기 수업, 방향제 만들기(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5회) 금 : 쿨트 및 각종 소품 만들기, 발효식초 만들기(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4회) 마지막 수업 : 행복만땅 (잔치하기) ○ 요일 : 월, 수, 금 ○ 시간 : 10~12시 수업, 12~14 식사 및 좌담 ○ 추진주체 및 협력자 : 참여기획분과 		

7. 제안의제(5)

과제명	건강한 먹거리 먹고, 건강하자		
소요예산	500만원		
제안위치 (장소)	통일로92가길 9	주요당사자	불광2동 주민
제안사유	불광2동 주민과 직접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보는 기회 제공		
만들고 싶은 변화	현재의 모습	만들고 싶은 변화	변화 확인 방법
			
제안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 : 불광2동 주민 ○ 주요내용 : 한과만들기, 생강편만들기, 육포만들기 ○ 추진주체 : 주민자치회 참여기획분과 		

V. 부록

- 0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19. 9. 10.

(제정) 2019.04.02.
 (일부개정) 2019.07.09.
 (일부개정) 2019.08.13.
 (일부개정) 2019.09.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따라 불광2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불광2동 주민자치회는 동지역사회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조례 제1조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불광2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불광2동 주민자치회” (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불광2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5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운영원칙) ① 제5조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은 조례 제 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미래세대의 건강한 육성 및 지역문화 진흥
4.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5. 주민 화합과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의 협력 도모
6.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 협의
3. 자치회관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처리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9조(위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과 선정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운영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타 직능단체 겸임을 3개 이내로 제한하며 주민자치회 임원은 타 직능단체 임원을 겸직하지 아니한다. 직능단체의 범위는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협의회,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 1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속 3회 불참하거나 정기회의에 연6회 불참하는 경우
 ② 제 ①항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회장에게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징계 및 요구)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와 주민과의 갈등을 발생시키거나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사람
 2. 범죄행위를 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 중 또는 처벌을 받은 사람
 3. 주민자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사람
 4. 주민자치회 위원의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①항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의 징계 및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위원 중 호선) 1명, 외부 인사 2명, 동 소속 공무원 1명, 임원이 아닌 주민자치회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단,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결정 전 ①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임원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간사 1명
 5.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② 임원의 선출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어 일반 민주주의 선거 기준에 따라야 하며, 투표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진행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3명을 선정하며 제①항의 임원 후보를 별도로 등록받아서 진행한다.

제13조(사무국 및 간사) ① 간사는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회장이 추천하며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록부와 근무상황기록부를 작성하며, 활동기록부 내용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간사활동비 지급 범위와 지급 유무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승인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부분과장(분과간사)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①항과 제③항에 따른 간사와 부분과장은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한다.
 ⑤ 간사활동을 사임할 경우에는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⑥ 간사의 역할

1. 주민자치회 회의 제반 준비 및 회의록 작성하여 SNS와 사무실에 비치하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공람한다.
2. 주민자치회 예산회계 실무(예산신청 및 정산보고)
3.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 운영지원
4. 주민총회 준비 및 과정 실무 지원
5. 행정사무 위수탁 및 자치회관 관리 실무 역할
6. 자원봉사자 관리

제14조(임원 임무)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소위원회 구성과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의 결정 사항 보고 및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 결정 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사무국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보조하며 주민자치회 실무 사항을 간사와 함께 수행한다.
- ⑦ 위원은 운영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6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15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회무·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의
 3. 임시회의
 4. 임원회의
 5. 분과회의
 6. 민관협력 회의
- ②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 후 별도의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람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주민총회는 개최 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만15세 이상인 주민의 0.5% 이상 참석(사전투표자 포함)으로 한다. 또한 의사정족수에는 불광2동 거주자와 불광2동 소재의 사업자, 단체소속 등의 생활주민을 포함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지 및 나이를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제17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시행에 필요한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해촉 요구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④ 임시회의는 조례 제 18조 1항에 따라 진행하며 제2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는 세칙 제12조에 따른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회 운영 및 분과별 진행과정 공유, 상호조정 및 협의
 ④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민관협력회의) ① 민관협력회의는 주민자치회의 목적달성과 기능의 기본 이념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의 민관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② 동장과 행정팀장, 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이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회의는 월1회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에 동장이나 자치회장이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민관실무회의는 자치회 간사와 담당주무관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시로 진행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회의 수는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③ 분과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분과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분과장은 분과의 부분과장을 지명한다.
 ④ 각 분과회의는 분야별로 환경, 이웃돌봄, 안전, 마을공동체, 참여기획분과를 구성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분과위원 수는 5명 이상으로 하며 최대 15명을 넘지 않게 한다.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 1회 분과장이 소집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제21조 (주민설명회)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공개 모집 및 분과원 모집과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논의10)

제22조 (회의 의결) ① 위원은 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제11조에 따른다.
 ③ 제 ②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변경(제정·개정·폐지)
 2. 임원 해임 및 위원의 해촉 요구
 3.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제23조 (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장은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④ 주민자치회 및 구청이 주관하는 정책공유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 대장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모든 회의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3. 문서접수 대장
 4. 문서등록 대장
 5. 각종 회계장부
 6. 사업계획서
 7.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8. 기타 전자문서를 포함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로서 은평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25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한다.

- ② 직인은 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 직인 날인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자치회관 운영 원칙) ①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회관 운영 분과위원회의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주민들이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조 내지 제 14조,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3장 재정 및 예산 관리

제27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수강료,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 찬조금, 회비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3. 수익금은 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4.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5. 찬조금은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이 후원한 예산
 6. 회비는 자치위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수입으로, 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회비의 사용처는 규칙 [부칙 3]에 따른다.
-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하되, 매월 정기 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 ② 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회비미납) 회비납부는 운영세칙 제28조에 따라 운영되며, 3회 미납 시 제11조(위원의 징계 및 요구)를 적용하여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절차를 따른다.

제33조(사무국 및 운영위원 구성 등) 주민자치회는 사무와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 사무국과 운영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간사, 사무국, 운영위원, 동지원관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감사회의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의 구성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선출직 자치위원으로 제한한다.

부 칙 (2019. 4. 2.)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19. 4.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참여예산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제3조(회비 사용처) ①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총무를 두어 회비와 위원관리를 하게하며 총무는 무보수로 한다.

1. 민관협력 행사시 단체 회비 (축제, 체육대회, 자매결연지 방문 등)
2. 현금성 경비 (택배, 쿠팡비, 택시비, 세탁비등의 현금결제 등)
3. 주민자치회 비품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4. 기타 정기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② 10,000원 미만으로 경미한 지출 시 선결제 한 후에 자치회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2019. 7. 9.)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19. 7. 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 보칙을 제정하며, 정기회의의 승인을 거쳐 2019. 7. 9.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8. 13.)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19. 8.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 제16조 ②를 개정하며, 정기회의의 승인을 거쳐 2019. 8. 13.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9. 10.)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2019. 9.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주민자치회는 운영세칙 제16조 ②를 개정하며, 정기회의의 승인을 거쳐 2019. 9. 10.부터 적용한다.

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6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일부개정) 2019.07.18 조례 제127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2.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관급공사와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 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 하지 않는다.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①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8.)

②위원에게는 은평구 지역소식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지역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18.]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계획

-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의 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018.9.27.전부개정에 따라 이전 부칙 삭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